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6.

발 의 자 : 김정재 · 박충권 · 서명옥
엄태영 · 김성원 · 박성훈
정동만 · 윤한홍 · 구자근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,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시·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·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관련 기관·단체”를 “시·도지사 및 관련 기관·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,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,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,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, 이를 <u>관련 기관·단체</u> 등에 제공할 수 있다.	제24조(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시·도지사 및</u> <u>관련 기관·단체</u>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